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 경 우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9

발의년월일: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김경우 의원 (1명)

찬 성 자: 권영희, 김경영, 김제리,

김호평, 문장길, 송아량,

이광성, 이동현, 이정인,

이호대, 장인홍, 홍성룡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노인, 장애인 등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기능개선, 유지관리, 정보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라.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시설대관, 문화강좌 등의 이용을 위한 예약, 결제 등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 2.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예약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예약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예약

시스템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약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 2.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3.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 4. 그 밖에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실태조사), 제6 조(사업추진)에 따라 비용 발생
 - ※ 단, 안 제6조 제1호, 제2호는 서울시(정보기획관) 기 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붙임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 나. 추계결과 = 253,000천원 (연평균 50,6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4조(실태조사)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문화 체육관광부의 '정책포털 이용현황 분석'비용을 준용하고, 3년에 1번으로 가정
 - 안 제6조(사업추진) 제3호의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비'는 서울시 내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정보취약계층 관련 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시스템 이용 교육자료(매뉴얼)를 배포하고 강사료를 지원하여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제
 - ·서울시 정보기획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집합정보 화교육을 369,448천원의 예산으로 기 추진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취지상 정보취약계 층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사용자 교 육이 별도로 필요
 - 서울시 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각각 35개소, 51개소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을 전제

- 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기관 당 연 1회, 강사 1명이 진행하는 것을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253,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P ' '
세입	_	-	-	-	-	-	_
	소계(a)	-	-	-	-	-	_
세출	제4조(실태조사)	19,000	-	-	19,000	-	38,000
	제6조제3호 (시스템 사용자 교육비)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215,000
	소계(b)	62,000	43,000	43,000	62,000	43,000	253,000
□ 총 비용(b-a)		62,000	43,000	43,000	62,000	43,000	253,000

- 시스템 이용현황 등 실태조사비 = 38,000천원

= 19,000천원 × 2회

- ·시스템 이용현황 등 실태조사는 3년에 1번으로 가정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포털 이용현황 분석'비용 준용
- 연간 교육비 ≒ 43,000천원
 - = 교육자료 제작비(21,500천원) + 강사료(21,500천원)
 - ·교육자료 제작비 = 5천원 \times 4,300부 = 21,500천원
 - ·강 사 료 = 86명 \times 250천원 = 21,5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교육자료 제작비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107,500
강사료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107,500
총계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215,000

주1: 교육자료 제작비는 1부 당 5,000원, 기관 당 50부씩 배포를 전제로 추계

2: 강사료 지급기준은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19.3.1.)의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정보화 1급, 2시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2 02-2180-7954

e-mail: thdud36@seoul.go.kr